

서울특별시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(임종국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2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2일

발 의 자 : 임종국, 강대호, 권수정, 권영희, 김경우, 김기대, 김기덕, 김생환, 김수규, 김인호, 김재형, 김정태, 김춘례, 김평남, 김혜련, 노승재, 문장길, 박기열, 박기재, 성흠제, 송도호, 송아량, 송정빈, 신정호, 유 용, 이광호, 이상훈, 이영실, 이정인, 이호대, 장상기, 장인홍, 정진철, 최 선, 황규복, 황인구 의원(36명)

1. 제안이유

- 동 조례는 2011년 「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6·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(이하 ‘실무위원회’)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. 본 조례 제13조(존속기간)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정하고 있으나, 위원회가 2017년 6월 12일 공식적으로 임기 만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
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
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
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